

보도자료

2011년 10월 21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 디지털방송지원과 정창림 과장(☎ 750-1480)

방통위, 강원도와 디지털전환 공동협력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강원도내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일(금) 강원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 중 지상파아날로그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보조(10만원)를 하고, 공동주택의 공시청시설 개선 등 디지털전환 관련 홍보를 공동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강원도내에서 지상파아날로그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취약계층은 약 5천여 가구로 예상되며, 이르면 11월중으로 강원도내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지원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방통위는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식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 근화7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디지털TV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DTV 기증은 지난 1월 롯데홈쇼핑이 디지털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총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붙임 : 디지털방송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 개요 1부. 끝.

[붙임]

디지털방송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자발적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TV수신료 면제가구(국가유공자 및 시청각장애인 등) 중 직접 수신가구에 대해 지원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

-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면서 아날로그 TV로 시청하는 가구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②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 ③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정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지원내용

-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의 구매보조(10만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 지원 중 선택 지원,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지원

□ 지원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인터넷 : 민원24(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